## 2019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: 기본(지출처별)내역 [개인연금저축]

(조회기간 : 2019년 01~12월)

### ■ 가입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김길동	750101-*****

### ■ 개인연금저축 납입내역

(단위:원)

상호	사업자번호	계좌/증권번호	계약시작일	계약종료일	납입금액 계
A협동조합중앙회	219-82-01***	04411218821005	1996-07-23	2020-07-23	2,760,000
C금융투자	116-81-36***	03001107662005	1994-08-25	2020-08-25	3,300,000
합 계					6,060,000

※ 개인연금저축은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납입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 금액을 계산하므로 조회기간을 선택하여 조회한 경우에도 1년 전체 납입액이 조회됩니다.

- 1. 개인연금저축(2000.12.31. 이전 가입): 근로자(사업소득자)가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연간 불입액의 40% 공제 (연 72만원 한도) 연도 중에 중도 해지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 납입액은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
- 2. 개인연금저축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 후 금융기관에서 연간 납입액을 제출합니다.

일련번호: 20191219-01171367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## 2019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:기본내역 [연금저축]

(조회기간 : 2019년 01~12월)

### ■ 가입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김길동	750101-*****

■ 연금저축 납입내역 (단위:원)

상호	사업자번호	당해연도 납입금액	당해연도 납입액 중 인출금액	순납입금액
계좌번호		납입금액	인출금액	
A협동조합중앙회	219-82-01***	4,000,000	0	4,000,000
983102	135692	4,000,000	0	4,000,000
B증권주식회사	202-81-48***	1 100 000	0	1 100 000
983102	366790	1,100,000	0	1,100,000
순납입금	금액 합계			5,100,000

- ※ 연금계좌(연금저축, 퇴직연금) 납입액은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납입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하므로 조회기간을 선택하여 조회한 경우에도 1년 전체 납입액이 조회됩니다.
- 1. 연금저축(2001.1.1. 이후 가입) : 근로자(사업소득자)가 가입한 연금저축의 연간 불입액 공제
- 2. 세액공제 대상금액 : 납입액(전환 신청 금액 포함)에서 인출액을 제외한 순납입액 합계
- 3. 공제 한도 :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순납입액을 합하여 연 700만원 한도(연금저축계좌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1억2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자 400만원, 초과자는 300만원을 한도로 함)
- 4. 연금저축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 후 금융기관에서 연간 납입액을 제출합니다.

일련번호: 20191219-01171367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# 2019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: 기본(지출처별)내역 [퇴직연금]

(조회기간 : 2019년 01~12월)

### ■ 가입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김길동	750101-*****

■ 퇴직연금 납입내역 (단위:원)

상호	사업자번호	당해연도 납입금액	당해연도 납입액 중 인출금액	순납입금액
계좌번호	연금구분	납입금액	인출금액	E0064
B증권주식회사	202-81-48***	2 200 000	1 800 000	2,000,000
707215508828	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	3,800,000	1,800,000	2,000,000
C금융투자	116-81-36***	1 000 000	1,000,000	0
707222091928	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	1,000,000	1,000,000	O
순납입금	·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			2,000,000

- ※ 연금계좌(연금저축, 퇴직연금) 납입액은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납입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하므로 조회기간을 선택하여 조회한 경우에도 1년 전체 납입액이 조회됩니다.
- 1. 퇴직연금 : 연간 근로자 부담금 공제 (회사 부담금 제외)
- 2. 공제 대상: 납입액(전환 신청 금액 포함)에서 인출액을 제외한 순납입액 합계
- 3. 공제 한도 :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순납입액을 합하여 연 700만원 한도 (연금저축계좌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1억2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자 400만원, 초과자는 300만원을 한도로 함)

-3-

4. 퇴직연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 후 금융기관에서 연간 납입액을 제출합니다.

일련번호 : 20191219-01171367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